LH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세요?

● 전세임대 문의처

지역본부	관할지역	연락처
서울지역본부	서울	1670-2591 *문자상담 : 1670-2591 단, 45자 이내로 제한
경기지역본부	경기	1670-2592
인천지역본부	인천	1670-2593
부산울산지역본부	부산, 울산	051)460-5523~5528
대구경북지역본부	대구, 경북	053)603-2800
광주전남지역본부	광주, 전남	062)360-3265 062)360-3321 062)360-3324
대전충남지역본부	대전, 세종, 충남	042)470-0700
강원지역본부	강원	033)258-4166 033)258-4148 033)258-4127
충북지역본부	충북	043)220-8890 043)220-8891
전북지역본부	전북	063)230-6362 063)230-6357
경남지역본부	경남	1800-0553
제주지역본부	제주	064)720-1034 064)720-1036

HOME

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빠르게-

LH 전세임대 모바일웹

mjeonse.lh.or.kr

복권위원회

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.
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
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
지원되고 있습니다.

희망을 잇다, 삶을 잇다.
주거복지 로드맵

2018.02

청년라이프 주거꿀팁
LH 청년전세임대

2018년 청년(대학생·취업준비생) 입주자 수시모집

FIGHTING, 2018



● 신청기간

|대 학 생| 2017.11.27(월)~2018.12.31(월)
|취업준비생| 2018.01.22(월)~2018.12.31(월)



LH마이홈콜센터 1600-1004

| LH 청 약 센 터 | http://apply.lh.or.kr
| 전월세지원센터 | http://jeonse.lh.or.kr



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

LH 한국토지주택공사

수시지원제도란?

별도의 신청기한이 없이 연중 365일 신청·접수를 받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

●신청자격

|대 학 생|

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·군 출신 대학생

|취업준비생|

①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

② 신청일 현재 2018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

1순위	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,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% 이하 장애인 가구* 청년
2순위	전년도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*, 전년도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 가구* 청년
3순위	전년도 월평균소득 100% 이하 가구, 전년도 월평균소득 150% 이하 장애인 가구 청년

*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
●가구별 소득기준

[단위 : 원]

구분	3인 이하	4인	5인
50%	2,442,220	2,815,130	2,815,130
70%	3,419,110	3,941,190	3,941,190
100%	4,884,448	5,630,275	5,630,275
150%	7,326,670	8,445,410	8,445,410

※6인 이상부터는 모집공고문 참고

●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



17,800만원 이하

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,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



2,545만원 이하

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, 장애인 사용 자동차, 국가유공자(상이 1~7급)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

※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3순위에는 적용하지 않음

●신 청 기 간

|대 학 생| 2017.11.27(월)~2018.12.31(월)

|취업준비생| 2018.01.22(월)~2018.12.31(월)

●신 청 방 법

주민등록등본, 재학증명서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**LH청약센터** http://apply.lh.or.kr 에서 인터넷 신청

●입주대상자안내

신청 후 약 2개월 뒤 개별 통보

●지원가능주택

|대 학 생|

대학소재지역[특별시,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 지역] 및 연접 시·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"전세" 또는 "보증부월세"로 계약 가능한 주택

|취업준비생|

신청지역[특별시,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 지역] 내 주택으로 "전세" 또는 "보증부월세"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, 부모님 또는 배우자(기혼자에 해당)의 주소지 시·군 제외

[전용면적 기준]

일반형	셰어형	
단독거주	2인 거주	3인거주
60㎡ 이하	70㎡ 이하	85㎡ 이하

[주택유형]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일반형 청년전세임대(단독거주)

|대 상| 1·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

|지원한도액|

구분	수도권	광역시	기타지역
금액	1.2억원	9천5백만원	8천5백만원

※대학생 3순위 해당자는 추후 예비자로 별도 모집

|임 대 조 건|

구분	보증금	월임대료 (지원금 기준)		
		4천만원 이하	4천~6천만원	6천만원 초과
1·2순위	100만원	연 1.0%	연 1.5%	연 2.0%

* 정부계획에 따라 지원금액,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금액 적용
*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,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(졸업시 재계약불가)

수도권 전세금 8,000만원 주택에 1·2순위 청년이 입주한 경우



(임대보증금) 100만원

(월 임대료) [(전세금 - 임대보증금) × 2%(연) ÷ 12개월]

= [(8,000만원 - 100만원) × 2% ÷ 12] = 131,660원

셰어형 대학생전세임대(공동거주)

|대 상| 1·2·3순위 대학생

|지원한도액|

구분	수도권	광역시	기타지역
2인 거주	1.5억원	1.2억원	1.0억원
3인 거주	2.0억원	1.5억원	1.2억원

|임 대 조 건|

구분	보증금	월임대료 (지원금 기준)		
		4천만원 이하	4천~6천만원	6천만원 초과
1·2순위	100만원	연 1.0%	연 1.5%	연 2.0%
3순위	200만원	연 2.0%	연 2.5%	연 3.0%

* 정부계획에 따라 지원금액,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금액 적용
*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,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(졸업시 재계약불가)

수도권 전세금 1억4천만원 주택에 1·3순위 대학생이 공동입주한 경우



※ 1순위 대학생

(임대보증금) 100만원

(월 임대료) [(전세금 - 임대보증금) × 2%(연) ÷ 12개월]

= [(7,000만원 - 100만원) × 2% ÷ 12] = 115,000원

※ 3순위 대학생

(임대보증금) 200만원

(월 임대료) [(전세금 - 임대보증금) × 3%(연) ÷ 12개월]

= [(7,000만원 - 200만원) × 3% ÷ 12] = 170,000원